

● **통영시 고시 제2020-181호**

통영도시관리계획(시설:항만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우리시 관내 사랑면 금평리, 육지면 연화리 일원의 진촌항, 연화항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『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』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시설:항만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및 『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』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“<http://luris.mltm.go.kr>”에서 열람가능)는 우리시 도시과에 비치합니다.

2020년 10월 22일

통 영 시 장

1. 통영도시관리계획(시설:항만) 결정(경미한 변경) 조서 및 사유서

가. 항만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 (육지부)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6	진촌항	지방어항	사랑면 금평리 일원	114,267	감) 4,437	109,830	경상남도고시 제2010-360호 (10.06.24)	11,900
변경	17	연화항	지방어항	육지면 연화리 일원	33,217	감) 1,189	32,028	경상남도고시 제2010-360호 (10.06.24)	14,096

나. 항만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 경 사 유
16	진촌항	○ 구역 변경 - 면적 : 114,267㎡→109,830㎡(감 4,437㎡) ○ 육지면적 변경 - 면적 : 16,337㎡→11,900㎡	• 어촌뉴딜사업을 통하여 기항지 개선,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, 어항경관 개선을 통해 방문객 유입 효과 및 어항마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항만시설 경계 조정 및 육지면적 변경
17	연화항	○ 구역 변경 - 면적 : 33,217㎡→32,028㎡(감 1,189㎡) ○ 육지면적 변경 - 면적 = 13,754㎡→14,096㎡ • 착오정정 : 13,754㎡→15,285㎡(증 1,531㎡) • 금회변경 : 15,285㎡→14,096㎡(감 1,189㎡)	• 어촌뉴딜사업을 통하여 기항지 개선,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, 어항경관 개선을 통해 방문객 유입 효과 및 어항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항만시설 경계 조정 및 육지면적 변경